

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0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10. 13. / 차해영 의원 외 7인
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4.
- 다. 상정일자: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10. 2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남해석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-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4조~제5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)
-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~제8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가. 제정 조례안 취지 및 필요성

- 본 조례 제정안은 2025년 10월 13일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‘로컬크리에이터’는 ‘로컬(지역)’과 ‘크리에이터(창작자)’의 합성어로,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의미함.
- 최근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창업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, 특히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기반 소비문화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로컬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.
-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‘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’을 추진 중이며, 현재 전국 약 93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.
- 마포구는 홍대·연남동·망원시장·경의선숲길 등 풍부한 문화·관광자원과 창의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, 로컬 창작과 콘텐츠 산업의 결합을 통해 지역 가치 제고 및 도시브랜드 강화가 기대됨.
- 그러나 현재 관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산발 추진되는 등 법적·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,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.
- 이에 본 조례 제정은 지역 자원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,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 정책적·입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.
- 참고로 경기도, 경상북도, 서대문구 등 8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임.

나. 주요 내용

- 본 조례안은 제정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,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사업,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〈조례안의 조문 체계〉

조 항	조 제목	조 항	조 제목
제1조	목적	제5조	지원 사업
제2조	정의	제6조	위원회 설치 및 기능
제3조	구청장의 책무	제7조	위탁
제4조	지원계획의 수립	제8조	협력체계 구축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를 “지역의 자연환경·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”로 정의하고 있으며,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‘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’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동일함.
- 안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에서는 구청장이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, 기본방향·목표·정책 및 자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(지원사업)에서는 아이디어 인프라 확충, 판로 개척, 교육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도록 명시함.
- 안 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에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」를 설치하여 정책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, 필요 시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’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.
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중앙정부·서울특별시·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함.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지역의 창의적 자원을 활용한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높음.
- 특히 문화·예술·관광자원과 연계된 로컬 브랜드 창업은 마포구의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.
- 다만, 유사한 청년창업·소상공인 지원정책과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의 연계·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.
- 또한,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, 지역 브랜드 상품,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로컬 비즈니스의 홍보 및 판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.

붙임 1

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개요(중소벤처기업부)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(지원대상) 로컬크리에이터
- (지원규모) 개인트랙 210개사 (최대 4천만원)
협업트랙 24개팀 (최대 7천만원)

[참고]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

◆ 정의 : '지역의 자연·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'

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'지역가치 창업가'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

7대 유형	① 지역가치	② 로컬푸드	③ 지역기반제조	④ 지역특화관광
	⑤ 거점브랜드	⑥ 디지털문화체험	⑦ 자연친화활동	

*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

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

- 지역의 유·무형 자원 (역사전통, 문화예술, 자연생태, 생활문화, 지역특산물 등)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

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

-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

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
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, 지역 내 고용창출,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
□ 지원내용

- (사업화자금)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* 선정팀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
- (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 우대)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(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),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(최대 3억원 사업화 자금),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(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) 등

□ 로컬크리에이터 우수사례

	<와이제이컴퍼니> · (아이템) 제주의 지역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어묵 · (내용) 제주산 실고리돔 등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어묵으로, 첨가물을 배제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. 지역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중
	<키친파이버> · (아이템) 영도의 폐바지선을 활용한 해상정원 · (내용)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현대인의 치유와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 공원 프로젝트. 2025년 오픈 예정인 바지선 해상정원은 180포트의 식물을 활용한 정원 시스템, 지역 스토리를 담은 미식 콘텐츠, 국내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는 가든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
	<흑유재> · (아이템) 지역 특산물과 스토리를 담은 한식 다과와 감각적인 문화 공간 · (내용) 양평 흑천을 모티브로 지역적 특색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 다과와 쉼의 공간 제공. 매월 지역 특산물로 제작한 '이 달의 양갱'과 지역 특산물을 담은 음료로 지역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
	<스킵믹스> · (아이템) 양양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스킵보드 · (내용) 양양의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해 스킵보드를 제작. 관광객들에게 얇은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역동적인 해양 스포츠를 제공하며, 양양의 지역 활성화와 ESG 가치를 실현
	<그리닝> · (아이템) 금산 인삼 부산물을 활용한 K-뷰티 화장품 · (내용) 금산 인삼의 부산물을 재가공해 피부 자극은 줄이고 보습력을 높인 화장품. 지역 농가와 상생하며 금산 인삼의 글로벌 가치를 확장하는 K-뷰티 브랜드
	<갱소년> · (아이템) 전통 간식 양갱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다과 제품 · (내용)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전통 간식 양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,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중심으로 로컬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실현
	<제주로부터> · (아이템) 제주의 로컬 농산물과 먹거리를 큐레이션한 유통 플랫폼 · (내용) 제주의 소농과 생산자를 지원하며, 제주의 식문화와 여행 경험을 더한 로컬 먹거리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. 다품종 소량 생산과 예약 주문 방식을 통해 제주의 고유 농산물 가치를 재발견하며 로컬 생태계를 새롭게 디자인

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(약칭: 중소기업창업법)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(이하 “신산업·기술 창업”이라 한다)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예비재창업자, 재창업기업 등(이하 “창업기업등”이라 한다)의 기술성, 사업성, 혁신성,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,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·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8조(지역특화형 신산업·기술 창업의 활성화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·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·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소상공인의 책무)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약칭: 소상공인법)

제8조(소상공인 창업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

2.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·자문 및 교육
3. 자금조달, 인력, 판로 및 사업장 입지(立地)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4.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·자문 및 교육
2.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·인력·판매·수출 등의 지원
3.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
4.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
5.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
6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